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동영 (통일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통일교육 지원법에서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, 관계기관·단체·대학 등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위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, 통일교육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촉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며, 그 밖에 위촉·해촉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같은 조에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과 제5항부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·단체·대학 등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위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일교육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위원에게 해촉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위원의 위촉·해촉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통일교육위원) <u><신 설></u> ①~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8조(통일교육위원) <u>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 2항에 따라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·단체·대학 등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위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</u> <u>②~④ (현행 제1항~제3항과 같음)</u> <u>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 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일교육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위원에게 해촉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u> <u>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위원의 위촉·해촉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시민교육협력과	
연 락 처	(02) 901 - 7060